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0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12039 압류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◯◯시장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2023. 4. 6. 선고 2022구합1167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2. 23.
판 결 선 고	2024. 3. 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2. 7. 20. 원고에게 ◯◯시 B 임야 4,357㎡ 중 1/144 지분 및 C 임야 1,520㎡ 중 1/144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.[1)]

1) 원고는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을 면적으로 표시하여 특정하고 있으나(소장), 이는 원고가 압류처분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,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지분으로 특정한다.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. 7. 20. ◯◯시 D 임야 96㎡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0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.[2)]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(별지 포함)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노○○

판사 차○○

판사 이○○

부분을 취하하였다(제1심 제3회 변론조서).

2) 항소장 항소취지에는 '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.'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, 항소장의 다른 기재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.